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조세감면 등 특혜정책 관련 사항에** **관한 국무원의 통지**국발[2015]25호각 성·자치구·직할시 인민정부, 국무원 각 부처 및 직속기구:<조세감면 등 특혜정책 정리 및 규범화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>(국발[2014]62호)의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.1. 국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조세감면 등 특혜정책은 항목별로 확실하게 시행해야 한다.2. 각 지역 및 각 부서가 이미 출범한 특혜정책은 규정된 기한이 있을 경우 규정된 기한에 따라 집행하고; 규정된 기한이 없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가 변화 규칙 장악, 적절성 보장의 원칙에 따라 과도기를 정하고 과도기 내에 지속적으로 집행한다.3. 각 지역이 기업과 체결한 기존 계약 상의 특혜정책은 지속적으로 유효하고; 이미 이행한 부분은 소급하지 않는다.4. 각 지역 및 각 부서가 법률, 행정법규에 정해진 사항 이외의 기타 조세 수입 또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비조세 수입과 연관된 특혜정책을 새로 제정·출범하는 경우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해야 하고; 기타 특혜정책은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해야 한다. 그 중 지출을 배정함에 있어 기업이 납부한 조세 수입 또는 비조세 수입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.5. <조세감면 등 특혜정책 정리 및 규범화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>(국발[2014]62호)에 규정한 전문 정리 사업은 향후 별도 계획 수립 후 다시 추진한다.국무원2015년 5월 10일 |  | **国务院关于税收等优惠政策相关事项的通知**国发〔2015〕25号各省、自治区、直辖市人民政府，国务院各部委、各直属机构：　　现就《国务院关于清理规范税收等优惠政策的通知》（国发〔2014〕62号）中涉及的相关事项通知如下：　　一、国家统一制定的税收等优惠政策，要逐项落实到位。　　二、各地区、各部门已经出台的优惠政策，有规定期限的，按规定期限执行；没有规定期限又确需调整的，由地方政府和相关部门按照把握节奏、确保稳妥的原则设立过渡期，在过渡期内继续执行。　　三、各地与企业已签订合同中的优惠政策，继续有效；对已兑现的部分，不溯及既往。　　四、各地区、各部门今后制定出台新的优惠政策，除法律、行政法规已有规定事项外，涉及税收或中央批准设立的非税收入的，应报国务院批准后执行；其他由地方政府和相关部门批准后执行，其中安排支出一般不得与企业缴纳的税收或非税收入挂钩。　　五、《国务院关于清理规范税收等优惠政策的通知》（国发〔2014〕62号）规定的专项清理工作，待今后另行部署后再进行。　　　　　　　　　国务院2015年5月10日 |